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4월 2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4월 2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5월 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가.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  
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경상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인용 자치법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4조제1항)
- 인용 자치법규명 현행화(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첨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4. 25.
- 회부일자 : 2025. 4. 28.
- 상정일자 : 2024. 5. 7.

#### 2.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  
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경상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인용 자치법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협의회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4조제1항)
- 인용 자치법규명 현행화(안 제7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서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대행할 수 있고, 제30조의2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입법의 취지

-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용 자치법규명을 현행화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의 제목을 ‘경비의 지원’으로 하고 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항에 구체화하여 규정함.
- 안 제7조에서 인용 조례명을 현행에 맞추어 「평창군 포상 조례」로 수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협의회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확화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용 조례 등을 현행화하여 법적 통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제19324호]

제9조(사무기구) ① ~ ③ (생략)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 ③ (생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05호]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30.>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0.>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략)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4
----------	-----

제출년월일 : 2025. 4. 25.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경상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인용 자치법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협의회 지원범위 명확화: 안 제4조제1항

- (기존)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사업
3.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
6.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7.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
9.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원 관련 용어 수정: 안 제4조제2항

- (기존) 사무 지원 → (개정) 경비 지원

○ 인용 자치법규명 현행화: 안 제7조

- (기존) 「평창군포상조례」 → (개정) 「평창군 포상 조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27. ~2025. 3.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321호, 행정담당관-5382(2025. 2. 26.)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3677(2025. 3. 5.)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3677(2025. 3. 5.)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8287(2025. 3. 4.)호]

5) 법제심사 : 적정(일부 수정) [기획예산과-5013(2025. 3. 31.)호]

- 경비 지원 근거 인용 법령 표기 수정(안 제4조 제1항)

(기존) 군수는 영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이하 생략)

(수정)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이하 생략)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6249(2025. 4. 18.)호]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무지원 및 준용 등)”을 “(경비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를 “경비”로 한다.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사업
3.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
6.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7.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
9.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중 “「평창군포상조례」”를 “「평창군 포상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u>사무지원 및 준용 등</u>)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u>경비의 지원</u>) ① 군수는 영 제30조제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 운영비</li> <li>2.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사업</li> <li>3.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사업</li> <li>4.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li> <li>5. 평화통일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li> <li>6.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li> <li>7.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li> <li>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li> <li>9.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② ----- 경비 -----

<p>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 용한다.</p>	<p>----- ----- ----- -----. -----.</p>
<p>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 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u>「평창군포상조 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p>	<p>제7조(포상) ----- ----- ----- ----- <u>「평창군 포상 조 례」</u>----- -----.</p>

# 관 계 법령 발췌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제19324호]

### 제9조(사무기구) ① ~ ③ (생략)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 ③ (생략)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05호]

###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30.>

-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 정하는 사무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0.>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략)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경비의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협의회 연간 지원비용: 30,000,000원
  - 가. 협의회 운영지원(보조금): 연 15,000,000원
  - 나. 협의회 사업지원(보조금): 연 5,000,000원
  - 다. 자문위원 역량함양 워크숍(보조금): 연 10,000,000원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담당관 김 두 기
연락처	(033) 330 - 2210